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가 무엇인가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공공 구매지원제도를 약용하여 계약 후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 납품, 명의 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공구매제품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제품은 직접생산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따라 공공구매계약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 확인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후 실사를 거쳐 판정을 받아야 한다. 품목에 따라 직접생산이 아닌 것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청생산, 부정적 납품 등을 방지하고 납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관리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사후관리 대상 기업은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은 기업 중

- 공공기관 또는 관련 중소기업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업체
- 동일 주소지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 업체
- 기관·단체의 임원업체 등 조사의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체
- 대표자가 관련제품 생산에 동일한 2개 이상인 업체 등이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 자료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납품 계약 후에 해당기업의 생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벌금의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한 생산시설 보유여부 등 실질

적인 생산능력을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생산 확인 기준을 특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총칙 중 개정된 내용은

- * 경쟁제품 중 세부품목별 시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일 설비를 사용하여 여타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 등을 감안하여 생산시설을 판단함
-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창업·신규기업도 생산능력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既 생산·납품 실적(민수실적도 가능) 확인을 받도록 함
- * 신기술 개발제품 관련 특례 : 기술(공법)의 발달로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직접생산확인 관련 검증 결과를 인정하거나 기존 해당제품 확인기준을 준용하여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며 이와 함께 55개 중기간 경쟁제품의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하였다.

공공구매정보망에 처음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는 신규기업등록 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기업등록 방법은 일반이용자로 회원가입을 한 후 회사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받은 후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의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 후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기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확인을 신청한 후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및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 단계를 마치면 중소기업확인원을 출력할 수 있다.

관련사이트_중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okprmy@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